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(郡) 지역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, 경쟁력 강화, 균형 및 공동발전,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「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」를 구성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구　　성: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　※ 현재 72개 郡 참여

○ 주요기능

-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, 보존, 이용, 개발에 관한 사항
-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
-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, 시책 수립, 연계 협력,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·처리함.

○ 회의개최: 정기회의 연 1회,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

○ 분 담 금: 2백만원

○ 주요활동 사항

-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창립 : 2012. 11. 2
- 회원군 전체회의 개최 7회 (2012년 ~ 2016년)
- 농어촌지역 각종 정책포럼 개최
- 행자부, 농식품부 장관 면담 및 농어촌현안 건의 등

4. 참고사항

가. 협의회 규약(안)

나. 관련법령: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협의회 규약안은 전국의 농어촌지역 군(郡)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・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, 경쟁력 강화, 균형 및 공동 발전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군(郡)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협의회 구성(안제3조),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·보존·이용·개발,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·시책 수립·연계 협력·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(안 제9조), 연 1회 정기회의 개최(안 제11조), 협의회 회비·분담금(안 제19조) 규정 등 총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2012년에 구성되어 현재 전국의 7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, 대외개방과 농촌인구 감소, 고령화 문제 등 농어촌의 현안해결과 중앙정부에 각종 정책을 건의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규약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